

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2차 안내 (변경)

- 본 안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업무」 지침(제9판) 추가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23021, 2022.7.27.)에 따라 2022.7.11.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(보험급여과-3602(2022.7.15.))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. * 보험급여과-3602호(2022.7.15.)에서 변경된 사항은 파란색 표시
-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비(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)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,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지원 항목에 대한 청구방법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부담금 지원(유지) 항목	참고
①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-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(재택치료 환자관리료)	연번 7, 8
② 외래 혈액투석 환자 비용 지원 -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(AH050), 혈액투석 인상수가(OH011)	연번 9, 10
③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 원외처방(단독) 시 약국 비용 지원	연번 7
④-⑤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외래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용(약제비 포함) 및 원외처방(약국 약제비) 지원	연번 7
④-⑥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(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)시 코로나19 관련 약제비(원내조제 및 약국 약제비) 지원	연번 7, 8-1
⑤ 응급실(외래본인부담을 적용 환자 포함)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지원	연번 1-1

1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

○ 의료기관

연번	질 의	답 변
1	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하여 청구함 ○ 또한,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) 및 MX999(기타내역)의 별도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음

연번	질 의	답 변																						
		<p>- 다만,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은 기존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작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명세서 작성 변경사항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left;">명세서 작성구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코로나19 확진일(검체채취일)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'22.7.10.까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2.7.11.이후~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세서 내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코로나19 외래 진료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고지원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세서 통합작성* (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정내역 구분코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MT04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3/02" 기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기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MX99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H재택치료" 등 기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기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③JX999*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H전화상담처방" 등 기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H전화상담처방" 등 기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응급실 명세서 동일 적용 ** (예시) 재택치료(전화상담·처방형, 의료상담센터형) 시 '외래진찰료' 해당 줄번호의 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란에 "H전화상담처방" 기재</p> <p>※ 명세서 통합작성 예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코로나19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확진 당일 외래 진료비(진찰료 등)와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약제비(원외처방전 1매로 통합) ③ 재택치료 진료내역(의료기관 주도형 제외)과 외래 대면진료 내역(요양시설 입소자 대면진료 제외) ④ 재택치료(의료기관 주도형 제외) 또는 외래 대면진료(요양시설 입소자 대면진료 제외)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(연번 1-1 참고) 	명세서 작성구분		코로나19 확진일(검체채취일)				~'22.7.10.까지	'22.7.11.이후~	명세서 내역	코로나19 외래 진료비	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고지원)	명세서 통합작성* (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)	특정내역 구분코드	①MT043	"3/02" 기재	미기재	②MX999	"H 재택치료 " 등 기재	미기재	③JX999**	"H 전화상담처방 " 등 기재	"H 전화상담처방 " 등 기재
명세서 작성구분		코로나19 확진일(검체채취일)																						
		~'22.7.10.까지	'22.7.11.이후~																					
명세서 내역	코로나19 외래 진료비	명세서 분리작성 (코로나19 국고지원)	명세서 통합작성* (코로나19 국고지원 종료)																					
특정내역 구분코드	①MT043	"3/02" 기재	미기재																					
	②MX999	"H 재택치료 " 등 기재	미기재																					
	③JX999**	"H 전화상담처방 " 등 기재	"H 전화상담처방 " 등 기재																					
1-1 (변경)	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 당일 입원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,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- 이 경우, 격리입원 치료비 등 국고지원 명세서(특정내역 MT043 기재)와 미지원 명세서(특정내역 MT043 미기재)로 각각 분리 작성함 * (예시)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 또는 재택치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질 의	답 변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특정내역 (MT043)</th> <th>본인부담률</th> <th>진료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입원 명세서 1</td> <td>"3/02" 기재</td> <td rowspan="2">입원 환자 본인부담률</td> <td>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</td> </tr> <tr> <td>입원 명세서 2</td> <td>-</td> <td>외래 진료비(진찰료, 신속항원검사, 원외처방 등), 재택치료 진료내역 (의료기관 주도형 제외), 타 상병 진료비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단, 응급실(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 포함) 진료 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경우 응급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국고지원으로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명세서에 합산하여 청구</p>	구분	특정내역 (MT043)	본인부담률	진료내역	입원 명세서 1	"3/02" 기재	입원 환자 본인부담률	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	입원 명세서 2	-	외래 진료비(진찰료, 신속항원검사, 원외처방 등), 재택치료 진료내역 (의료기관 주도형 제외), 타 상병 진료비 등
구분	특정내역 (MT043)	본인부담률	진료내역										
입원 명세서 1	"3/02" 기재	입원 환자 본인부담률	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										
입원 명세서 2	-		외래 진료비(진찰료, 신속항원검사, 원외처방 등), 재택치료 진료내역 (의료기관 주도형 제외), 타 상병 진료비 등										
2	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처방전 기재 관련 변경사항은?	<p>○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라,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는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</p> <p>- 기재 예시: 코로나19, 코로나19 확진, ... 등</p> <p>* (예시) 재택치료 전화상담·처방형 대상 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질환으로 원외처방한 경우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처방전</th> <th colspan="2">코로나19 확진일(검체채취일)</th> </tr> <tr> <th>~ '22.7.10.까지 (본인부담금 지원)</th> <th>'22.7.11. 이후 ~ (본인부담금 미지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'조제 시 참고사항'란</td> <td>"H/재택치료"로 기재</td> <td>"코로나19" 등으로 기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처방전	코로나19 확진일(검체채취일)		~ '22.7.10.까지 (본인부담금 지원)	'22.7.11. 이후 ~ (본인부담금 미지원)	'조제 시 참고사항'란	"H/재택치료"로 기재	"코로나19" 등으로 기재			
처방전	코로나19 확진일(검체채취일)												
	~ '22.7.10.까지 (본인부담금 지원)	'22.7.11. 이후 ~ (본인부담금 미지원)											
'조제 시 참고사항'란	"H/재택치료"로 기재	"코로나19" 등으로 기재											
3	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외래에서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(조제)한 경우 처방전 발행은?	<p>○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함</p> <p>- 이 경우,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행함 (예: 코로나19, 코로나19확진, ... 등)</p>											

연번	질 의	답 변
4	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에게 코로나19 경구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를 원내조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	<p>○ 외래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(팍스로비드 등) 원내 투약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(특정내역 MT043 미기재)로 작성·청구함</p> <p>- 이 경우,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"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"(보험급여과-232호, 2022.1.12.)을 따름</p>

○ 약국

연번	질 의	답 변
5	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 관련,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의 기재내용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?	<p>○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*으로 기재되지 않고, 코로나19 관련임을 알 수 있는 경우("코로나19", "코로나19확진" 등 기재)</p> <p>- 환자 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·청구함 (특정내역 MT043 미기재)</p> <p>*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"G/요양시설", "입원경구치료제"로 기재된 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임</p>
6	약국에서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사항은?	<p>○ 기존의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및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의 청구방법 안내에 따른 특정내역구분 코드 MX999(기타내역)란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작성·청구함</p> <p>-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산정 시 · 특정내역 MX999(기타내역): "코로나19확진" 기재</p> <p>-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· 특정내역 MX999(기타내역): "코로나19대면" 기재</p> <p>※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임</p>

2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

연번	질 의	답 변												
7 (변경)	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변경에 따른 청구방법은? * 외래 혈액투석은 연번 9번, 10번 참고조	<p>○ 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다음의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이 명세서를 작성하며, 미지원 명세서(특정내역 MT043 미기재)와 분리작성하여 청구함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본인부담금 지원 대상</th> <th>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</th> <th>처방전 (조제시 참고사항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(의료기관 주도형) ※ 요양시설 입소자 제외</td> <td><의료기관> ①MT043: "3/02" 기재 ②MX999: "H/재택치료" 기재</td> <td>"코로나19, 코로나19 확진" 등으로 기재</td> </tr> <tr> <td>② 요양시설*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시(약제 포함) 또는 재택치료(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)를 받는 경우(약제 포함)</td> <td><의료기관, 약국> ①MT043: "3/02" 기재 ②MX999: "G/요양시설" 기재</td> <td>"G/요양시설" 기재</td> </tr> <tr> <td>③ 입원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(단독) 시</td> <td><약국> ①MT043: "3/02" 기재 ②MX999: "입원경구치료제" 기재</td> <td>"입원경구치료제" 기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요양시설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 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,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</p> <p>○ 재택치료(의료기관 주도형)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진료 당일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, 국비지원 입원명세서로 작성하여 청구함 - 이 때, 명세서 특정내역 MX999란에 "H/재택치료" 및 "G/요양시설"은 기재하지 않음</p>	본인부담금 지원 대상	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	처방전 (조제시 참고사항)	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(의료기관 주도형) ※ 요양시설 입소자 제외	<의료기관> ①MT043: "3/02" 기재 ②MX999: "H/재택치료" 기재	"코로나19, 코로나19 확진" 등으로 기재	② 요양시설*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시(약제 포함) 또는 재택치료(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)를 받는 경우(약제 포함)	<의료기관, 약국> ①MT043: "3/02" 기재 ②MX999: "G/요양시설" 기재	"G/요양시설" 기재	③ 입원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(단독) 시	<약국> ①MT043: "3/02" 기재 ②MX999: "입원경구치료제" 기재	"입원경구치료제" 기재
본인부담금 지원 대상	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	처방전 (조제시 참고사항)												
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(의료기관 주도형) ※ 요양시설 입소자 제외	<의료기관> ①MT043: "3/02" 기재 ②MX999: "H/재택치료" 기재	"코로나19, 코로나19 확진" 등으로 기재												
② 요양시설*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시(약제 포함) 또는 재택치료(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)를 받는 경우(약제 포함)	<의료기관, 약국> ①MT043: "3/02" 기재 ②MX999: "G/요양시설" 기재	"G/요양시설" 기재												
③ 입원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(단독) 시	<약국> ①MT043: "3/02" 기재 ②MX999: "입원경구치료제" 기재	"입원경구치료제" 기재												
8 (변경)	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의 경우, 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(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)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?	<p>○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의 경우, '재택치료 환자 관리료'만 본인부담금 지원되고, 약제비 등은 본인 부담금 미지원에 따라 명세서를 구분 작성·청구함</p>												

연번	질 의	답 변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외래·조제투약 명세서</th> <th>진료(조제)내역</th> <th>특정내역기재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명세서 1 (국비 지원)</td> <td>재택치료 환자관리료</td> <td>· MT043: "3/02" 기재 · MX999: "H/재택치료" 기재</td> </tr> <tr> <td>명세서 2 (국비 미지원)</td> <td>약제비 등 진료내역 (처방내역 포함)</td> <td>미기재 (단 경구치료제 원내조제 시 MX999에 "경구치료제" 기재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단,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(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대상)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약제비는 아래 연번 8-1의 청구방법을 따름</p>	외래·조제투약 명세서	진료(조제)내역	특정내역기재란	명세서 1 (국비 지원)	재택치료 환자관리료	· MT043: "3/02" 기재 · MX999: "H/재택치료" 기재	명세서 2 (국비 미지원)	약제비 등 진료내역 (처방내역 포함)	미기재 (단 경구치료제 원내조제 시 MX999에 "경구치료제" 기재)
외래·조제투약 명세서	진료(조제)내역	특정내역기재란									
명세서 1 (국비 지원)	재택치료 환자관리료	· MT043: "3/02" 기재 · MX999: "H/재택치료" 기재									
명세서 2 (국비 미지원)	약제비 등 진료내역 (처방내역 포함)	미기재 (단 경구치료제 원내조제 시 MX999에 "경구치료제" 기재)									
8-1 (추가)	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비(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 산정 대상) 및 약제비 지원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?	<p>○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비(의료기관 주도형 환자관리료) 및 이에 따라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은 국고 지원되므로,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로 작성·청구함</p> <p>- 원외처방전의 '조제시 참고사항'에 "G/요양시설"을 기재하여 발행하며, 약국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의 MT043 "3/02" 및 MX999 "G/요양시설" 기재하여 청구함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외래·조제투약 명세서</th> <th>진료(조제)내역</th> <th>특정내역기재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명세서 1 (국비 지원)</td> <td>재택치료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(처방내역 포함)</td> <td>· MT043: "3/02" 기재 · MX999: "G/요양시설" 기재 (단 경구치료제 조제 시 MX999에 "경구치료제" 추가 기재)</td> </tr> <tr> <td>명세서 2 (국비 미지원)</td> <td>타상병 약제비 등 (처방내역 포함)</td> <td>미기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외래·조제투약 명세서	진료(조제)내역	특정내역기재란	명세서 1 (국비 지원)	재택치료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(처방내역 포함)	· MT043: "3/02" 기재 · MX999: "G/요양시설" 기재 (단 경구치료제 조제 시 MX999에 "경구치료제" 추가 기재)	명세서 2 (국비 미지원)	타상병 약제비 등 (처방내역 포함)	미기재
외래·조제투약 명세서	진료(조제)내역	특정내역기재란									
명세서 1 (국비 지원)	재택치료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(처방내역 포함)	· MT043: "3/02" 기재 · MX999: "G/요양시설" 기재 (단 경구치료제 조제 시 MX999에 "경구치료제" 추가 기재)									
명세서 2 (국비 미지원)	타상병 약제비 등 (처방내역 포함)	미기재									
9	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를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	<p>○ 코로나19 확진자 외래투석 시 격리관리료(AH050) 및 혈액투석 인상수가(OH011)는 본인부담금 지원되고, 코로나19 관련 약제비는 미지원에 따라 명세서를 구분 작성하여 분리청구함</p>									

연번	질 의	답 변		
		외래 명세서	진료내역	특정내역기재란
		명세서 1 (국비 미지원)	혈액투석 및 타진료내역 + 원내조제 약제 또는 원외처방 내역 (코로나19 약제 포함)	-
		명세서 2 (국비 지원)	코로나19확진자 혈액투석[1회당] (OH011)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(AH050)	· MF043: "3/02" 기재 · MX999: "코로나19 확진투석" 기재
10 (의료 급여)	2022.7.11.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투석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 외 타 상병 진료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	○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(타 진료내역 명세서)의 '상해외인'란에 "M"을 기재하여 청구함		
		외래 명세서	진료내역	특정내역기재란
		명세서 1 (국비 미지원)	혈액투석 진료내역	-
		명세서 2 (국비 미지원)	타 진료내역 + 원내조제 약제 또는 원외처방 내역 (코로나19 약제 포함)	· MT001: "M" 기재
		명세서 3 (국비 지원)	코로나19확진자 혈액투석[1회당](OH011) 인공신장실내 격리관리료(AH050)	· MF043: "3/02" 기재 · MX999: "코로나19 확진투석" 기재